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3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0.

발의자 : 이만희 · 서천호 · 구자근
김기웅 · 엄태영 · 김소희
김상훈 · 임종득 · 신동욱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농어촌정비법」이나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교환 · 분합하는 농지,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 · 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, 이러한 지방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경지의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농어촌정비법」이나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교환 · 분합하는 농지,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 · 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